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10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세무 및 법률정보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 국세청,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 세무조사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출처: 금융감독원, 2022. 1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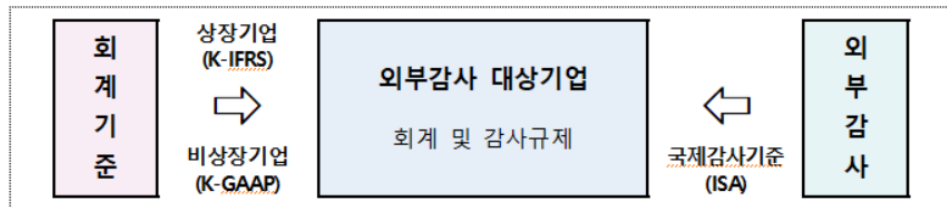
주요내용

-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 미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하고, 소규모 비상장 회사에는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 규제개선에 상응하여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은 높이겠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확대(현재보다 3배 이상)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장대기업 (외감대상 33,250개 중 496개, 1.5%)을 위주로 설계-운영되어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규모가 적음에도 상장 대기업과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어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 위주로 설계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아울러 '18년 회계개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보다 크게 작용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개월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9.30)에서 심층 논의하였습니다.

중소기업회계
환경및평가



- (회계기준) 상장회사(예정회사 포함) 및 금융회사는 K-IFRS가 의무 적용되며, 비상장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가 적용됩니다.
- (문제점) IFRS는 '원칙중심 회계'로 회계처리 시 판단 여지가 많고, 요구 공시수준이 높아 소규모 상장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

□ (회계·감사규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상장사는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며, 대형 비상장사는 이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①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②감사담당이사의 연속감사 가능기간 제한, ③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 (문제점) 대형 상장사 위주의 회계·감사 관련 각종 제도가 기업 부담능력과 적용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감사기준) 현재 외부감사인은 기업규모, 상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감사대상기업에 대해 국제감사기준(ISA)을 적용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대형 상장기업에게 요구되는 감사절차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불필요하고 감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

□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

○ (현황)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중속기업에서 '모든' 중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 지배·중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 (개선)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중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합니다.

□ 기업·감사인 간 의견교환

○ (현황) 지정 감사인들이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사소통 요청을 거부*하고 외부컨설팅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 자문금지 규제(외부감사법§6⑥)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처벌 우려

○ (개선)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작성·배포하고, 필요시 비조치 의견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허용행위: 기업이 제시한 회계처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전달 등

* 금지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 등

□ 리픽싱 조건부 증권 회계처리

○ (현황) 리픽싱 조건부 RCPS*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 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 (Preference Shares)

** 행사가격과 수량이 고정되면 자본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리픽싱 조건 있으면 부채로 분류

- 상장 前에는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리픽싱 조건부 RCPS가 해당 기업이 상장하면서 적용 회계기준이 변경(K-GAAP→K-IFRS)되어 '부채'로 분류됩니다.

- 이로 인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도 정상적인 성장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 (개선) 리픽싱 조건부 RCPS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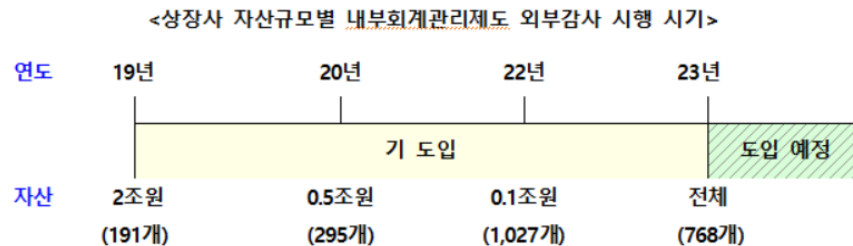
○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거래소 內)하여 운영합니다.

* '22.9.27일부터 업무 既 개시(대표번호: 02-3774-9413), 10월 중 개소식 예정

(2) 회계·감사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인증수준 *외부감사법 개정**

○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내년부터는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도 ①시총 750만 달러 미만 기업과 ②시총 7억 달러 미만&매출액 1억 달러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

○ (개선)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를 추진합니다.(인증수준을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

※ '감사'와 '검토'의 차이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 대형 비상장사 범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 (현황) '대형 비상장사'(자산 1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회계개혁('18년)시 도입된 개념으로,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 (개선)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수준, 3,841개→807개(△3,034개))

※ 다만, ①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천억원 기준 유지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 (현황) 상장사와 자산 1천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비상장사는 자산총액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업규모와 투자자 수에 비해 부담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 미국과 일본은 상장사에 대해서만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구축의무 부여

○ (개선)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합니다.

* (원칙)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 (예외) ①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등

(3) 외부감사 부담 경감

□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

○ (현황) 국제감사기준(ISA)은 대형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영세하고 거래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약 12,887개

** 국제감사기준위원회에서 추진 중(현재 초안 공개, '25년 시행 예정)인 제도를 우선 시행

□ 감사실무

○ (현황) 중소 회계법인은 대형법인*과 달리 인력 및 자원상 한계 등으로 소규모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소규모 회사 감사시 자체 개발한 완화된 감사프로그램과 맞춤형 소프트웨어 사용

○ (개선)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감사조사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을 강화합니다.

(4) 보완 방안

□ 공시 내실화

○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내용(운영실태·평가보고서)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공시 실효성이 낮고,

-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가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상존하였습니다.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1회 비적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2회 연속 비적정)

○ (개선)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합니다.

- 회사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상장유지와 관련한 페널티를 완화*하고, 개선노력 정도를 감리조치에 반영**합니다.

*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충실성에 따라 회계감리 조치시 1단계 가중 또는 감경

□ 신고포상금 확대

○ (현황) 회계부정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중('06년~)이나, 실제 보상금액이 낮아 (건당 평균 3~4천만원)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 건별 포상금 규모가 크게 증가(3배)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 포상금 산정액=등급별 포상한도 기준액×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을 2배 증액(현행 5억원→10억원)하고,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는 핵심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합니다.

* 예) '협조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정성적인 요소는 제거

기대효과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비용(재무제표 작성비용,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

□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23.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세정동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정부는 '22.10.19.(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입법예고는 한시적 조치로, '22.10.17. 부터 '22.12.31. 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 *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국채 등의 이자, 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의 세율) 적용 가능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22.9.2.)된 상황에서 금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와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국세청,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
세무조사

국세청은 2022.10.6.(목)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주자 관련**

- (사례1) 해외이주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 반출 후 자녀에게 증여
 -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력이 없음에도 국내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친이 반출한 재산을 증여 받은 혐의
- (사례2)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재이체
 - 자녀는 해외에서 근무 및 사업 이력 등이 없음에도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사례3)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 해외이주자가 이주 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등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사례4) 해외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
 - 부동산임대업자인 A는 해외이 후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국내 임대 소득이 발생함에도 해외송금 등 국내 재산 반출 내역이 없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해외이주자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누림

□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 (사례5) 제조회사 A법인의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 소득을 누락한 후 그 자금을 유출하고, 동 자금을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
 -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 허위·통정거래

- (사례6) 건설업자 A는 수년 전 취득한 토지를 특수관계 부실 법인 B (A가 100% 보유)에게 취득가액 수준으로 양도하고, B는 수개월 후 제3자인 C에게 재양도하여 양도세 탈루
 - B는 부동산 취득 자격이 없는 무재산 결손법인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A가 직접 C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
- (사례7)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연소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고액의 이자 수취 및 원금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 자녀가 대여금을 지급할 시점에 부친의 예금자산은 감소하였고, 자녀는 원금을 상환 받은 후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는 등 대여금의 실제 귀속자는 부친임에도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자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09.27)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

(2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서1817, 2022.09.2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풀이됨(조심 2020서7419, 2021.12.7., 같은 뜻임).

- 처분청은 2016년 12월에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4년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1.11.1.에 이르러서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21-0023, 2022.02.23.)

-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6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시행사들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및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예기치 못한 자금사정 악화에 처해 부득이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법인세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의 경영상태 및 자금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인정되고, 쟁점시행사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이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사매출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대법원 89누8095, 1990.5.11.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공사미수금 채권 지연회수가 조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하였다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